

2009 달라지는 양계정책 및 시행지침

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. 이에 본고는 양계관련 주요 내용을 발췌·정리한 것이다.

- 편집자주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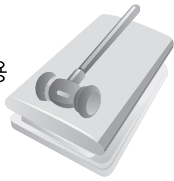
새롭게 변화되는 양계정책(요약)

정부는 '08.12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취급기관을 확대하고, '09.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,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 추가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이다.

-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융자기관 선택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양계·오리사육업의 경우 축산업 등록대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3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, 축산업 등록기준이 없는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표1. 신·구 대비표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	○ 가축사육시설면적 - 300 제곱미터 초과	○ 가축사육시설면적 - 50 제곱미터 초과	축산법 시행령('09.6월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(02-500-2063)
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에 등록대상 추가	○ 축산업 등록기준 - 종축업 : 종돈업, 종계업	○ 축산업 등록기준 - 종축업 : 종돈업, 종계업, 종오리업	축산법 시행령('09.6월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(02-500-2063)
축산발전기금 융자 취급기관 확대	○ 융자취급기관 - 농협, 일반 시중은행	○ 융자취급기관 - 농협, 일반 시중은행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	축산법 시행령('08.12월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(02-500-2063)



2009 농림(양계)사업 시행지침 주요내용

1.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

1. 목 적

-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

2. 성과목표 및 지표

- '17년까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젓소 축종의 축사 총 5,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

구분	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시기	측정방식
			'06	'07	'08		
양계	•일당증체량(육계)	39.8	38.8	39.3	39.5	매년 1월중	- 일당 증체량(통계청 생산비 조사)
오리	•연간회전율	5.8	5.5	5.6	5.7	매년 1월중	- 연간 출하횟수(오리협회 조사)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6년 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09년 이후
○ 양 계	-	-	-	24,192	335,808
- 보조	-	-	-	7,258	100,742
- 용 자	-	-	-	12,096	167,904
- 자부담	-	-	-	4,838	67,162

4. 사업대상자

- ①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(계열주체 포함) 또는 전업농 : 한(육)우, 양돈, 양계, 오리, 낙농 대상임
- * 전업농 기준 : 양계(닭) 30,000수 이상
- * 종돈장 · 종계장 · 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

5. 지원자격 및 요건

- '06.1.1 이후 축산업(소 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, 오리사육업, 낙농업)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(축산업 등록제 기준). 다만,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,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6. 지원대상

- 사업내용 :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
- *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
- *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
- 양계 · 오리 : 축사(무창 또는 개방) 및 내부기자재(급이 · 급수 · 환기 시설(공기정화기 등), 온 · 습도 조절장치 등), 폐사축 처리시설

7. 지원형태 및 사업량

-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
- 보조 30%, 용자 50%(연리 3%, 5년 거치 10년 상환), 자담 20%
 - * 용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
- 사업기간 : 1~2년(사업계획에 의함)

II. 축산공제사업

1. 목 적

- 자연재해(풍수해, 설해 등), 화재,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공제 및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
-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

2. 성과목표 및 지표

- 2014년까지 가축공제 및 가축보험(이하 “가축공제”라 한다)의 가입률을 60%까지 제고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06	'07	'08		
• 가축공제 가입률(주지표)	47.8	40.7	43.9	45.4	매년말	(공제가입두수/공제가입대상 가축두수)×100
• 대상축종 증가수(부지표)	1	1	2	1	매년말	매년도 가축공제 대상축종수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6년 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 이후
합 계	149,770	48,303	61,631	55,670	
보 조	75,057	23,415	28,673	27,835	
자부담	74,713	24,888	32,958	27,835	

4. 사업대상자

- 사업시행자(농협중앙회·LIG 컨소시엄)가 판매하는 가축공제(보험)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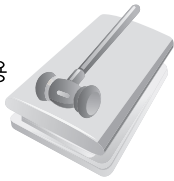
5. 지원자격 및 요건

가) 지원조건

- 가축공제로 및 보험료(이하 “공제료”라 한다) 지원 : 축발기금보조 50%, 가입자 부담 50%

나) 지원 제한사항

-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공제로 정부지원 제외
-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(시설포함)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.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(건물)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 - *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축공제 축사특약에 대한 정부의 공제로 지원 제외



6. 지원대상

-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(이하 “농업인”이라 말한다)

7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촉발기금 보조 50%, 자부담 50%

III. 축산종합지도(HACCP)지원사업

1. 목 적

-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·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·안전성 확보

2. 성과목표 및 지표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06	'07	'08		
• 참여농가(업체)수	320	45	80	175	2010.1	컨설팅 참여농가(업체) 실적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6년 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 이후
합 계	450	800	1,400	2,560	3,200/년
보 조	225	400	700	960	1,200/년
용 자	-	-	-	-	-
지방비	-	-	280	640	800/년
자부담	225	400	420	960	1,200/년

4. 사업대상자

- 지원대상 : 축산농가(소, 돼지, 닭)와 축산물작업장(식육판매업, 보관업, 운반업, 집유업)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·영업자
- 타 농림수산업(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)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·영업자 제외

5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
- 닭사육농가 : 축산업(닭사육업)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,000수 이상인 농가

6. 지원대상

- 사업대상자 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

7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기준 : 개소당 8백만원(보조 3백만원, 지방비 2백만원, 자부담 3백만원)
-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

IV.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

1. 목 적

-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
-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

2. 성과목표 및 지표

-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
- 현재 특장차량은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점유율을 50%까지 확대할 목표임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06	'07	'08		
• 가축수송 점유율	5%	-	-	-	2월 중	특장차량수송물량/연간 도축실적
• 계란수송 점유율	5%	-	-	-	2월 중	특장차량수송물량/연간 계란생산

*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, 연간도축실적은 축산물위생과 자료기준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6년 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 이후
• 가축수송특장차량	-	-	-	3,250	19,000
- 용 자	-	-	-	1,625	9,500
- 자부담	-	-	-	1,625	9,500
• 계란수송특장차량	-	-	-	650	3,800
- 용 자	-	-	-	325	1,900
- 자부담	-	-	-	325	1,900

4. 사업대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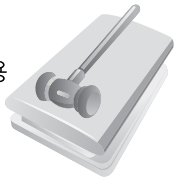
- 지원 대상자 : 농·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, 농가

5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신청자격 :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및 농·축협, 농가

< 우선지원 요건 >

-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



-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
- ② 축산물 공판장(도매시장) 등으로 공동(계통)출하 실적이 많은 농·축협
- ③ 농가

6. 지원대상

- 소, 돼지, 닭(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),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

7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(냉·난방시설, 급수시설 등) 설치비

8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주요 대상 축종 : 소, 돼지, 닭(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), 계란
- 조건 및 금리 : 축발기금, 융자 50%(연리 3%, 2년 거치 3년 상환), 자부담 50%

9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(냉·난방시설, 급수시설 등)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% 융자
- ※ 기존(중고)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,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 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,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(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) **양계**



인공수정 · 무산계감별

수탉매매알선

종계수탉 · 초생추 · 중추 · 노계 · 미환우계 · 유통
무산계 감별은 질병으로 산란율이 저하된 계군에
적용하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!!

아산축산 : 김승래 | **휴대폰 : 011-450-6881**
E-mail: kims610c@hanmail.net | **팩 스 : 041-549-7977**